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업무 담당 직원 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등 〉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164)

2025. 9.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충권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2. 14.
3. 회 부 일 : 2025. 2.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하 “보호대상자”라 함)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여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이들과 교류하는 공무원 등도 적절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직원 등에게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통일부장관이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들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고자 함(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직원 등에게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통일부장관이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3(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교육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의 내용과 방법, 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4(인식개선교육의 위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인식개선교육기관은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는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의3¹⁾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1)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6.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정착지원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서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및 자립 지원 이외에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 등은 없는 실정임.

-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 일반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안 제30조의3제1항), 국가기관 등의 장이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직원 등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안 제30조의3제2항), 통일부장관이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30조의4제3항),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인식 개선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안 제30조의4)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회 내에서 정착 과정에서의 어려움 중 하나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문화적 배제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²⁾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국민 전체의 인식전환 없이는 실질적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의 제고에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공적 서비스 제공자들이 차별적 시각 없이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으며, 전문강사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은 교육의 질과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³⁾는 통일교육기본계획의 내용으로

2) 국가인권위원회,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025.7.14. 참조

3)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2.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6.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9. 통일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
10. 통일문제 및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의 진흥에 관한 사항

통일교육⁴⁾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는바,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교육도 통일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도 있음.

□ 또한, 각급 학교 교원의 경우 부가적 행정업무 수행, 법정 의무교육 이수로 인하여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교육 의무화가 교원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음.⁵⁾

11. 통일교육 협력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5) 교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 현황(총 16개 교육)

내 용	연간 시수	법률 근거(약칭)	소관부처
4대폭력 예방교육	교육별 연 1회 1시간 이상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법 제5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여성가족부
다문화 이해 교육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여성가족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 교육	연 1회 이상	청탁금지법 제19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교육	연 1회 이상	부패방지법 제81조의2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연 1회 이상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연 1회 이상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식 개선 교육	연 1시간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보건복지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연 1시간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연 1시간 이상	아동복지법 제26조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연 1시간 이상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보건복지부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교육부
안전교육	3년마다 15시간 이상	학교안전법 제8조	교육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3시간 이상(실습 2시간)	학교보건법 제9조의2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교원지위법 제24조	교육부
인성교육	연 1시간 이상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교육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	연 1회 이상	정보공개법 제6조제5항	행정안전부

출처: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

□ 한편, 2025년 10월 시행 예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06호) 제22조의4⁶⁾는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은 업무 수행자 대상의 직무 연계형 교육으로 개정안에 따른 교육과 그 대상이 일정하게 중첩되고 있고, 그 실시가 임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 개정안에 따른 교육은 의무적 교육이면서 그 대상도 확대하고 있는바,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 상황을 우선적으로 살피면서 대상을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⁷⁾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06호, 시행 2025.10.9.) 제22조의4(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①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직업훈련 업무
 2. 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 업무
 3. 제22조에 따른 거주지 보호 업무
 4. 제22조의2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참고로, 제22조의4와 개정안이 병행할 경우 중복 시행, 정책 혼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명확한 역할 구분과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체계자구 측면에서, 개정안은 제30조의3과 제30조의4를 신설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제30조의2가 없으므로, 제30조의2, 제30조의3을 신설하거나 시행예정인 제22조의4와의 관계 설정에 따라 조문 위치를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취약계층 인식개선 및 이해증진 교육 유사 입법례〉

법률명	일반인 대상 교육	업무종사자 대상 교육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 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 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 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 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 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 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 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 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X
한부모 가족 지원법	X	제6조의2(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참고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은 최근 개정된(‘25.4.8.)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중복되며, 전문강사 양성 및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

정·위탁은 「통일교육지원법」 관련 규정과 중복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한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이해증진 교육과 관련한 3건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바, 이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박충권의원안 (의안번호 8164)	송옥주의원안 (의안번호 8556)	송재봉의원안 (의안번호 10919)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직원 등에게 <u>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u> 하도록 하며, 통일부장관이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들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고자 함(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u>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u> 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교육감 등에게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의5).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고용활성화를 위해 기존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고용 노력대상을 확대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u>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u> 하도록 하며,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 채용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의2)

문 의 처

02)6788-5267